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 3. 18 최을석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0. 3. 23
다. 상정·의결일자 : 2010. 3. 31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고성군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순서중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과를 둔다.
(안 제3조제2항제1호)
- 신설기구인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
(안 제3조 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근거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장 제13조
- 예산조치 : 불필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의 행정기구가 개편(조례1972호. 2010.1.28.)됨에 따라 신설된 기구인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로 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사무분장이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의 소관 업무와 연계되는 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준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 순서중 현행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정하고자 한 것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실과 설치순과 일치되게 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 2010. 3.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